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3. 5.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 보완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8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을 “삭제”.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안 제8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을 “삭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주민협의회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 협의회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 협의회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 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제8조(주민협의회회의 운영) ① (원안과 같음) 1~3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가. (원안과 같음) 나. (원안과 같음) <u>다. (삭제)</u>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 구미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서면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이하 “타사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
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시장에게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소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사업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 엘이디(LED)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으로 자진 정비하려는 자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 지원
3.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 중 경상북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옥외광고 모범업자에 대한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
4.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5.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거 등에 따른 비용
6.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옥외광고물등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으로 심사선정된 점포주·광고주·제작자·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한 시상금 및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併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여성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여성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도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 본인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⑧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서류 등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광고물심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위탁기간
3. 위탁받을 자의 임무
4.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5.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이하 “게시대 및 게시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대 및 게시판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게시대 및 게시판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게시대 및 게시판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일시,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

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3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5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신규·보수)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설치한 경우(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구미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임명·위촉된 구미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고
1.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0㎡ 초과 3.0㎡ 이하	30만원	
- 3.0㎡ 초과 4.0㎡ 이하	40만원	
- 4.0㎡ 초과 5.0㎡ 미만	45만원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0㎡ 초과 7.0㎡ 이하	65만원	
- 7.0㎡ 초과 8.0㎡ 이하	75만원	
- 8.0㎡ 초과 9.0㎡ 이하	85만원	
- 9.0㎡ 초과 10.0㎡ 미만	95만원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0㎡ 초과 14.0㎡ 이하	130만원	
- 14.0㎡ 초과 16.0㎡ 이하	145만원	
- 16.0㎡ 초과 18.0㎡ 이하	165만원	
- 18.0㎡ 초과 20.0㎡ 미만	185만원	
라.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0㎡ 초과 3.0㎡ 이하	30만원	
- 3.0㎡ 초과 4.0㎡ 이하	40만원	
- 4.0㎡ 초과 5.0㎡ 미만	49만원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0㎡ 초과 7.0㎡ 이하	65만원	
- 7.0㎡ 초과 8.0㎡ 이하	75만원	
- 8.0㎡ 초과 9.0㎡ 이하	85만원	
- 9.0㎡ 초과 10.0㎡ 미만	95만원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0㎡ 초과 14.0㎡ 이하	130만원	
- 14.0㎡ 초과 16.0㎡ 이하	150만원	
- 16.0㎡ 초과 18.0㎡ 이하	170만원	
- 18.0㎡ 초과 20.0㎡ 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5㎡ 초과 1.0㎡ 이하	35만원	
- 1.0㎡ 초과 2.0㎡ 이하	40만원	
- 2.0㎡ 초과 3.0㎡ 미만	48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 3.5㎡ 초과 4.0㎡ 이하	65만원	
- 4.0㎡ 초과 4.5㎡ 이하	80만원	
- 4.5㎡ 초과 5.0㎡ 미만	9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 6.0㎡ 초과 7.0㎡ 이하	130만원	
- 7.0㎡ 초과 8.0㎡ 이하	150만원	
- 8.0㎡ 초과 9.0㎡ 이하	170만원	
- 9.0㎡ 초과 10.0㎡ 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0㎡ 초과 3.0㎡ 이하	35만원	
- 3.0㎡ 초과 4.0㎡ 이하	40만원	
- 4.0㎡ 초과 5.0㎡ 미만	48만원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0㎡ 초과 7.0㎡ 이하	65만원	
- 7.0㎡ 초과 8.0㎡ 이하	75만원	
- 8.0㎡ 초과 9.0㎡ 이하	85만원	
- 9.0㎡ 초과 10.0㎡ 미만	95만원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0㎡ 초과 14.0㎡ 이하	130만원	
- 14.0㎡ 초과 16.0㎡ 이하	150만원	
- 16.0㎡ 초과 18.0㎡ 이하	170만원	
- 18.0㎡ 초과 20.0㎡ 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10만원	
- 25.0㎡ 초과 30.0㎡ 이하	230만원	
- 30.0㎡ 초과 35.0㎡ 이하	245만원	
- 35.0㎡ 초과 40.0㎡ 이하	260만원	
- 40.0㎡ 초과 45.0㎡ 이하	280만원	
- 45.0㎡ 초과 50.0㎡ 미만	290만원	
마.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0㎡ 초과	70만원 +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한도 : 100만원 이하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 + 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한도 : 100만원 이하

	금액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0㎡ 초과	7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한도 : 100만원 이하
나.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라.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이하	25만원	
- 연면적 5.0㎡초과 10㎡이하	30만원	
- 연면적 10.0㎡초과 15㎡이하	35만원	
- 연면적 15㎡초과	35만원+1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한도 : 50만원 미만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0㎡ 초과	15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한도 : 500만원 이하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0㎡ 초과 2.0㎡ 이하	20만원	
- 2.0㎡ 초과 3.0㎡ 미만	29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0㎡ 초과 5.0㎡ 미만	45만원	
3)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1. 가로형 간판		
가. 일반 가로형 간판(나)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3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2.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2,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3.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15,000원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4,000원	
4.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가)와 같음	
5.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6.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9.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9,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0원	
10.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11.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12.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13. 현수막		
가.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7,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14. 벽보(1건)	3,000원	
15. 전단(1건)	3,000원	
16.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 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	--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1.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2.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3.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4.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5.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3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1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8.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1.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2.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3만원	
- 0.5㎡ 초과 0.8㎡ 이하		22만원	
- 0.8㎡ 초과 1.0㎡ 미만		32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2만원	
- 1.3㎡ 초과 1.6㎡ 이하		50만원	
- 1.6㎡ 초과 2.0㎡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75만원	
- 2.3㎡ 초과 2.6㎡ 이하		100만원	
- 2.6㎡ 초과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8만원
- 0.5㎡ 초과 0.8㎡ 이하	12만원
- 0.8㎡ 초과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25만원
- 1.3㎡ 초과 1.6㎡ 이하	33만원
- 1.6㎡ 초과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8만원
- 2.3㎡ 초과 2.6㎡ 이하	67만원
- 2.6㎡ 초과 3.0㎡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8만원
- 1.0㎡ 초과 2.0㎡ 이하	12만원
- 2.0㎡ 초과 3.0㎡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22만원
- 3.7㎡ 초과 4.4㎡ 이하	25만원
- 4.4㎡ 초과 5.0㎡ 미만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 6.0㎡ 초과 8.0㎡ 이하	58만원	
- 8.0㎡ 초과 10.0㎡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 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 변 경 사 항	□ 비 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록 번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에어컨·가전·폐기물·냉난방· 외·기타·시설·장비·등의·종류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직인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구 미 시
--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 명함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직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 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류	③ 표시 내용	④ 수량	⑤ 보관 연월일	⑥ 보관 장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당 (취급)자	⑨ 비고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직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illegible]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구미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직인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소위원회10)일
광고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광고물 심의 신청내역	광고물종류	수량	
	광고물 설치위치		
	광고내용		
	광고물 규격(m)	광고물 높이(m)	
	전기 사용여부	여, 부	신청구분 신규, 변경
시공업소	업소명	대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건물명		준공년도	
건물구조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건물높이(m), 건물가로길이(m), 건물세로길이(m)		
사무소명	대표자	건축사업무신고필증번호	전화번호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 ④ 생략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併記)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생략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전문개정 2011.3.29]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하였을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옥외광고업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전문개정 2011.3.29]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

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10]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만을 첨부한다.

③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

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1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10.10>]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

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⑤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⑧ 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 의견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2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0.10>]

제27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7.9]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중전 제2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10.10>]

제3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

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
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
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
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10.10>]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1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2011.10.10>]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6조로 이동 <2011.10.10>]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10]

[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8조로 이동 <2011.10.10>]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2011.10.10>]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50조로 이동 <2011.10.10>]

제4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2조에서 이동 <2011.10.10>]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6조에서 이동 <2011.10.10>]